

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(안)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제출일 : 1996.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제안이유

국민건강증진법(1995. 1. 5 법률 제4914호)가 제정되어 '95. 9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○ 협의회의 기능(조례안 제2조 제1항 각호)

-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·시행 및 관련제도에 관하여 협의
-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
- 주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시정·변경등에 관한 사항 협의
-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등

○ 협의회의 구성(조례안 제3조)

- 위원장(부시장), 부위원장(보건소장)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은 공무원·주민 및 각계 각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

○ 위원의 임기(조례안 제4조) - 2년 (위촉직)

○ 회의 등(조례안 제6조)

-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3. 제정조례(안) : 붙임

4. 기타 참고자료 : 붙임

국민건강증진법 관련조문 날짜 1부.

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2.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
 3.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 4.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, 변경, 금지에 관한 사항
 5.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 6. 기타 시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-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, 공공기관과 학계, 언론계, 보건관련단체, 의·약단체,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계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(시 소속공무원)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 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6조(회의등)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 고 자 료

국민건강증진법(1995. 1. 5 법률 제4914호)

-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